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04. 21(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3. 20

나. 제안자 : 이한구, 조영홍, 강병수, 김영분, 안병배, 홍성욱 의원
(찬성자 6인)

다. 회부일자 : 2014. 03. 20

라. 상정일자 : 2014. 04. 21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한구 의원
- 검토보고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광역시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함 (안 제3조)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5조)
-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7조)
-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함 (안 제11조)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안 제13조)
-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¹⁾에 의거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인천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최근 공익침해 행위가 은밀화 되면서 조직 내에서 이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공익신고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함
- 본 조례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 및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로 인한 집단따돌림, 폭행 등의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신분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안 제16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로 하는 것이 조문의 내용과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강호 위원>

- 공익신고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는지?
 - 공익침해행위(불법, 부조리)가 생겼을 때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내용, 고발로 인한 내부자의 신원이 알려졌을 경우 따돌림, 해고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 내부고발로 인한 사건이 재판으로 연결될 경우, 고발자의 증인 신분보호가 가능한지, 예방방안은?
 - 재판증인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원노출 발생시 신고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며, 앞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봄.

<차준택 위원>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타 기업이 해당 기업과 거래를 꺼려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 2012년 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중이므로, 좀 더 건수가 많아지면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봄.
- 제8조의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 중 연 1회 교육이 현재 규정이나 훈령 상에 하고 있는지?
→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리플렛 전달, 홈페이지 홍보하고 있음.
이 부분은 규정에도 포함해서 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및 기업, 경제, 시민단체 등 협의체 구성, 두 가지 기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위원회 부분은 권익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에서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민간기업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협의체 구성없이 민간기업 활성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참여시키는 방안은?
→ 일단 금년도 규정을 운영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타 지자체 제정사례는?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2013년도에 집행부와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었음.
- 공익신고자 보호우수기업 홍보 지원부분의 불이익이 걱정되는데?
→ 공익신고자나 우수기업이 선택하고 감내하는 부분, 우수기업이 홍보지원 안 받겠다고 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음.
- 공익신고센터설치 운영에 대해, 별도 센터를 염두한 것인지?
→ 센터를 별도로 할 부분이라기보다 감사관실 내에 해당 팀이 센터를 운영하면 되고, 향후 운영하면서 확대하면 됨

<최용덕 위원>

- 신고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자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정책적 지원 마련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움.

<홍성욱 위원>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면 공익침해행위가 없어지거나 바로 잡혀질 수도 있겠지만 파파라치처럼 또 다른 부정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 신고시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음
- 공익신고자보호 우수기업 지정 부분이 실상과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 실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 조례에서 큰 틀을 만들면, 예산이나 위원회부분은 집행부가 검토하면서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임. 공익신고에 따른 시정 및 직원 신분유지 등 자기 반성하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임.

<류수용 위원>

- 공익신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신적 있으신지?
→ 법에 있는 내용으로 거의 유사함
- 서울시보다 왜 우리가 더 늦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규정을 1년 정도 운영하고 조례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 서울시는 포상금을 권익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규정을 1년 정도 운영하자는 이유는 2012년 9월부터 신고건수 4건뿐이라 금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이용범, 차준택,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 수정가결 내용

- 안 제7조 중“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를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 안 제16조(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조항을 ‘삭제’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중“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를“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 제16조(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조항을 ‘삭제’하며
-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u>공익신고센터</u> 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u>공익신고센터</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 제15조 (생략)	제8조 ~ 제15조 (제정안과 같음)
제16조(<u>지방세 세무조사 면제</u>)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u><삭제></u>
<u>제17조</u> (생략)	<u>제16조</u> (제정안과 같음)
<u>제18조</u> (생략)	<u>제17조</u> (제정안과 같음)
<u>제19조</u> (생략)	<u>제18조</u> (제정안과 같음)
<u>제20조</u> (생략)	<u>제19조</u> (제정안과 같음)
<u>제21조</u> (생략)	<u>제20조</u>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 및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익신고 시책에 참여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 등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등의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2.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처리 기준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
4.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추천
7.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
8.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받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4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